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정관

제정 2017.10.8. 정관 제1호 개정 2024.7.8. 정관 제17호
개정 2018.1.4. 정관 제2호 개정 2025.5.13. 정관 제18호
개정 2018.5.30. 정관 제3호
개정 2018.12.18. 정관 제4호
개정 2019.7.8. 정관 제5호
개정 2020.1.9. 정관 제6호
개정 2020.2.7. 정관 제7호
개정 2020.5.22. 정관 제8호
개정 2020.9.18. 정관 제9호
개정 2020.12.15. 정관 제10호
개정 2021.2.10. 정관 제11호
개정 2021.5.28. 정관 제12호
개정 2022.12.30. 정관 제13호
개정 2023.4.11. 정관 제14호
개정 2023.6.30. 정관 제15호
개정 2024.2.26. 정관 제1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시설물,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 및 기타 여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 생활의 편익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단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 Yeosu Urban Management Corporation(약호 YUMC)라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여수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500,000,000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시에서 출자한다. <개정 2018. 5. 30.>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광고방법)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광주·전남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2장 사업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8., 2025. 5. 13.>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업

나.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사업

다. 종량제 봉투 및 배출 스티커 판매 사업

라.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사업

마.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2. 법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3. 법 제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 중 각 목의 사업

가.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나.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다. 관광 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

제7조(사업계획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업의 집행)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등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20. 2. 7., 2021. 2. 10.>

②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이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7.>

③ 감사는 시의 감사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④ 공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이사장

2. 상임이사 <신설 2020. 2. 7.>

3. 시의 기획예산업무 담당 관·국장 <제2호에서 이동 2020. 2. 7., 202

3. 4. 11.>

4. 시의 청소업무 담당 관·국장 <제3호에서 이동 2020. 2. 7., 2023. 4.

11.>

5.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 <제4호에서 이동 2020. 2. 7.>

6. 법률 전문가 <제5호에서 이동 2020. 2. 7.>

7. 건설 관련 전문가 <제6호에서 이동 2020. 2. 7.>

8.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으로 공단운영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자 <제7호에서 이동 2020. 2. 7.>

⑤ 임원 중 이사장과 이사 2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비상임
으로 한다. <개정 2020. 2. 7., 2021. 2. 10.>

⑥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이사는
당연직이사로 하고,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이사는 임명직이사로 한
다. <개정 2020. 2. 7.>

⑦ 당연직 비상임이사 정수는 비상임이사의 3분의 1 이하로 임명하며,

2명 이내로 제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 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

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의 직무를 겸직한다. <신설 2020. 2. 7.>

④ 이사장의 유고시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4항에 의한 이사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그 외의 사항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0. 2. 7.>

⑤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0. 2. 7.>

⑥ 임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0. 2. 7.>

제13조(하부조직) ① 공단의 조직 및 정원은 「직제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25. 5. 13.>

② 이 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5. 13.>

제14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4. 7. 8.>

② 공단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7. 8.>

1. 삭제 <2023. 6. 30.>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개정 2019. 7. 8.>

②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6조(임직원의 복무) 공단의 임직원은 공단에서 정한 「취업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8.>

제17조(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단의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공단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단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단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정한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7. 8.>

②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참석 수당 이외 이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8.>

제22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23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고문)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및 주요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
8.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9.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0.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의결권의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의장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9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서면결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3조(운영규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따로 정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34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5조(회계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4. 7. 8.>

제36조(예산)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개최 30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

다.

②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예산이 확정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얻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8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 ② 제1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재산의 관리·처분 및 귀속) 공단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의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41조(일시차입) ①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예산서상의 차입한도 범위내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2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 ① 공단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공단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44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

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 결과·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여수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공단의 이사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안에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시와 공단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47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관·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48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위·수탁 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여수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부터 해당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임원의 임기) 공단의 최초 임원의 임기는 공단설립일에도 불구하고 종전 여수시도시공사(이하 ‘공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설립자본금) 종전 공사의 해산시점 자본금을 공단이 승계하여 이를 시가 공단설립을 위해 출자한 공단의 설립자본금으로 본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의 설립일을 기준일로하여 종전 공사에 속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공단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6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제규정과 금고의 지정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제규정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종전 공사의 규정 등을 준용하며, 이때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본다.

③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종전 공사가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단의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 공사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호, 2018. 1. 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 2018. 5. 3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18. 12. 1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 2019. 7. 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 2020. 1. 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 2020. 2. 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 2020. 5. 2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호, 2020. 9. 1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 2020. 12. 1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 2021. 2. 1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 2021. 5. 2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 2024. 2.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 별표 1, 별표 2 관련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명칭 변경됨에 따라 각종 규정 조문에 당해 명칭도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호, 2024. 7. 8.>

이 정관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 2025. 5. 13.>

이 정관은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25. 5. 13.>

[별표 2] 삭제 <2025. 5. 13.>